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88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이상식・이건태・최민희

어기구 · 정춘생 · 서미화

민병덕 · 김문수 · 박수현

부승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1년도 GDP의 약 1.3%, 국가예산의 약 4.8%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(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. 3.15.).

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, 어린이 · 노인 ·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,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,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 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 므로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 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범칙금·과태료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있음.

참고로, 2006년까지는 「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」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,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'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'를 설치하여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·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·관리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,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 회계를 설치하고,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·운영하도록 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서 부과·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의 100분의 50으로 충당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개선, 어린이·노인·장 애인 보호구역의 관리,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·관리, 교통안 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,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

실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(안 제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88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·관리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,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관리·운용)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는 경찰 청장이 관리·운용한다.
- 제3조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이 부 과·징수한 과태료의 100분의 50
 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162조제3항에 따라 국고(國庫)에 귀속되는 범 칙금의 100분의 50
 - 3.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,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- 4. 제6조에 따른 차입금
 - 5. 그 밖의 수입금
- 제4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, 제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

설치 · 개선에 필요한 경비

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· 관리
- 3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·노인·장애 인 보호구역에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관리
- 4.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
- 5.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
- 6.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
- 제5조(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)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,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 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.
- 제6조(차입금)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할 수 있다.
 - ②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- 제7조(예비비)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제8조(세출예산의 이월)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「국가재정법」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

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(잉여금의 처리)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